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계약심사 대상 및 처리기간 불합리

관 계 기 관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용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는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을 적용 받는 ‘지방공사’에 해당되며, 지방공사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계약심사 운영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SH공사 계약심사부에서는 [표 1]과 같이 2015년 9월(계약심사부 신설)부터 2018년 4월까지 270개 사업의 계약심사(설계변경심사 제외)를 실시하였고, SH공사 「계약심사규정 시행내규」 제3조에서 [표 2]의 사업을 자체 계약심사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그 중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계약심사 대상을 추정 가격 2천만원 초과(구매)와 3천만원 초과(제조) 사업으로 정하였다.

[표 1] SH공사 계약심사 실시현황

구 분	계			2015. 9. 이후			2016			2017			2018. 4. 이전		
	소계	공사	용역	소계	공사	용역	소계	공사	용역	소계	공사	용역	소계	공사	용역
계약심사	270	122	148	28	19	9	116	52	64	84	39	45	42	12	30

[표 2] SH공사 계약심사 대상사업

구 분		SH공사 계약심사 대상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
공사	종합(토목, 건축)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추정금액 5억원 미만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종합(조경)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추정금액 3억원 미만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전문공사	추정가격 7천만원 초과 추정금액 3억원 미만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추정금액 3억원 미만	
용역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추정금액 2억원 미만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물품의 구매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한편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지방공사에서 서울시에 의뢰해야 할 물품 제조·구매 사업의 계약심사 대상은 추정금액 2,000만원(추정가격 1,818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SH공사에서 물품 제조·구매에 대한 자체 계약심사 대상을 정할 때는 서울시 계약심사 비대상(추정가격 1,818만원 미만) 사업 중 일정 금액 이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SH공사는 물품에 대한 계약심사 대상을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구매) 또는 3천만원 초과(제조)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사실상 자체 심사대상이 없는데도 계약심사 대상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SH공사 「계약심사규정」 제13조 및 「계약심사규정 시행내규」 제6조에 따르면 계약심사 처리기한을 계약심사 의뢰문서 접수 다음날부터 공사 3일, 용역 2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SH공사(계약심사부)에서 2015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계약심사 결과 통보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 3]과 같이 전체 270건 중 82건(30%)을 최소 1일부터 최장 18일까지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하였고, 이처럼 계약심사 결과 지연통보 비율이 높음에도 SH공사는 계약심사 처리기한의 적정성 검토 및 지연통보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 없이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3] 계약심사 결과 지연처리 현황

구 분	계			2015. 9. 이후			2016			2017			2018. 4. 이전		
	소계	공사	용역	소계	공사	용역	소계	공사	용역	소계	공사	용역	소계	공사	용역
계약심사 건수	270	122	148	28	19	9	116	52	64	84	39	45	42	12	30
지연처리 건수	82(30%)	43	39	13	12	1	41	19	22	17	8	9	11	4	7

조치할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 ① 앞으로 계약심사 결과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통보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심사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자체 계약심사 대상 및 계약심사 처리기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계약심사 대상과 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통보)